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을 위한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글 | 정동기 사무관(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어류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WTO/DDA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배합사료)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04. 3. 18)하였다.

환경친화형 양식어업(배합사료)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어류양식어업 면허(가두리양식어업)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조식육상양식어업)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여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등으로 사업을 시범시행할 방침이다.

배합사료의 단점인 생사료보다 성장이 느리고 가격이 비싸 기존 어류양식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산어용 생사료의 배합사료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8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양식사료연구센터와 배합사료 생산업체인 수협사료공장을 통해 고효율 사료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식어병지도 등을 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동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 2008년까지 전체사용량의 80%까지 배합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4년 환경친화형 양식어업(배합사료) 직접직불제 시행지침>

1. 목적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어류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

2. 추진방향

2004년도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5년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

3. 2004년도 지원계획

(단위: ha, 백만원)

구분	물량	사업비	비고
계	160	5,000	
가두리	139	3,600	
수조식육상	21	1,400	

4. 시범사업 대상지역

○가두리양식어장: 충남·전남·경북·경남지역

○수조식육상어장: 전남·경북·경남·제주지역

○대상어종

- 가두리: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 수조식육상: 넙치

○대상어가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를 대상으로 한다
- 가두리, 수조식육상양식장은 모두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고, 어촌계 등 어업인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한다

○지원내용 및 수준

- 지급기준: 국고보조 100%
- 지원수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분
- 지원단가
 - 가두리양식어업: 배합사료 210원/kg
 - 수조식육상양식어업: 배합사료 190원/kg
- 지원한도

- 가두리양식어업: 1ha당 25,800천원
- 수조식육상양식어업: 0.35ha당 23,760천원

- 지원조건

-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배합사료 급이대장을 매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어가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이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 기준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은 어류양식 종류별 지급단가와 어가별 배합사료 사용기준에 의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대상어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어류양식 종류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각 어가에서 배합사료 급이대장 및 배합사료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다만, 배합사료 구매가격이 지급 단가보다 낮을 경우 실제 구매가격(세금계산서)으로 정산한다.

5.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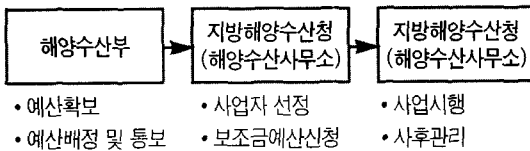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Extrude Pellet)에 한(분말사료 제외)한다

6.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나. 사업 추진체계



다.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04. 3. 22 ~ 4. 15
- 신청절차: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배합사료 직
접직불제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라. 사업자 선정

- 절차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도 또는 시·군, 연
구소(연구센터, 시협포), 수산관련학계, 수
협, 양식어업인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여 우선순위 및 별도의 선정기준에 대한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
주체가 선정한다
- 기준
 - 사업집행 주체는 아래의 우선순위 외에 배합
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불법시설어장 및 불법양식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가두리 양식어업〉

- ①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고 있는 어장
- ② 면허면적 2ha 이하 규모 양식어장
-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
되는 해역 인접어장
- ④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어장
- ⑤ 어장의 밀식도가 낮은 어장

〈수조식육상 양식어업〉

- ①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고 있는 어장
- ② 허가 및 신고면적이 6,000㎡ 이하 규모 양
식장
-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
되는 해역 인접어장
- ④ 어장의 밀식도가 낮은 어장

마. 사업대상자의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의 사망, 기타 불
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어업인 또는 어촌계장은 변
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
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의 변경의 경우 경영자가 바뀐 어
장은 새로 경영할 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자격
을 승계할 수 있다.

바. 교육 실시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배합사료 직접직불제의 효

을적 추진을 위해 대상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배합사료 급여방법 등 사업 대상어업인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양식사료연구센터)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사업기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회계년도 말까지

6. 행정사항

가. 사후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상어업인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대상어업인의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상 어업인이 배합사료 100% 사용 및 사료급여대장 작성 등 대상어업인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여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상 어업인이 다음의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배합사료 100% 사용의무 불이행
 - 배합사료 급여대장 작성 불이행 및 허위작성

- 부정한 방법으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허가(신고)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나. 수질검사 실시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 대상어장에 대한 수질검사(인, 질소, SS, COD)를 배합사료 급여 이전과 급여 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연구소, 연구센터 등) 등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의 환수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상자의 의무(배합사료 100% 사용 및 사료급여대장 작성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중 어병 및 재해로 인한 폐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에서 폐사원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폐사원인 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다.

라. 추진 일정

- 사업자 신청 및 선정: 4월 30일까지
- 대상 어업인 교육: 4월 30일까지 ⑤